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88
----------	-------

발의연월일 : 2018. 3. 8.

발의자 : 기동민 · 인재근 · 원혜영

안규백 · 박정 · 유은혜

김상희 · 정춘숙 · 심재권

이재정 · 유동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시행('17.8)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립암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표와 방향”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 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제4항 중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를 “암연구사업을 지원·자문하는 암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그 운영은 제27조”로,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을 “에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암연구사업의 수행, 암연구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련 정책수립, 연구, 기술개발 등 암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중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작업을 수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성, 가공된 자료를 국가암관리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제공과 관련된 신청 및 제공 절차,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암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 행태 모니터링
3. 암예방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개발
4. 대국민 암예방 교육 · 홍보사업
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 요인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노출 현황 및 인체 위해성 평가
  3. 발암요인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제공
  4.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 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발암요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을 “따른 암환자”로,  
“사람은”을 “사람(이하 “암환자 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 중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선  
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환자  
등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암환자 등의 동의는 암환자 등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나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 신청자로 등록하는 것에 암환자 등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개별 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 제4항”으로, “등에”를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해”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으로 생성, 가공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암정보 생산
2. 암정보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
3. 암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

제1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암정보의 확산 및 보급

제15조제3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정보”로, “업무”를 “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를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발생율”을 “발생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연구사업”을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 발생, 생존, 유병, 사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5.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 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제17조제2항제2호 중 “조사·연구사업”을 “조사·연구·모니터링”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암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 데이터의 수집, 통합, 유지, 관리 및 제공
3. 암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제공을 위한 기획, 연구, 개발
4. 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위한 지침과 절차의 마련 및 운영
5. 암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6. 암 데이터 사업을 위해 수집·처리·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7.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를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암 등록본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사업수행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의 암관리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절차”를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다음에 “제4절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삽입한다.

제2장제4절에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관리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암생존자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3. 암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암생존자 등록, 관리, 조사 사업
6.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대한 홍보
7. 제22조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평가 및 제23조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취소
8. 암생존자 관리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대상, 지원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지원
3.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지역사회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지원
3. 지역 중심 암생존자 홍보
4.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에게 관련 업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잘못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암연구소”를 “연구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관리”를 “관리, 암관리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암관리 사업 수행, 평가 및 지원

제30조제4호 중 “홍보”를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을 위한 교육
9. 국가암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사업
1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호스피스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제30조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4조제1항 중 “암연구소장”을 “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암연구소”를 “연구소”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를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대부받  
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  
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에 드는 비용  
제4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비용

6.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8조 중 “제19조제4항”을 “제20조 또는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별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u></p> <p>2. “<u>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u></u></p> <p>② <u>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u></p>	<p><u>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u></p> <p>-----</p> <p>-- <u>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u></p> <p>② <u>종합계획-----</u></p> <p>-----.</p> <p>1. ----- <u>기본목표와 추진</u></p>

<p>2. 암관리사업의 <u>추진 계획</u> 및 추진 방법</p> <p>3. · 4.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u>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u></p> <p><u>③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u></p> <p><u>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조 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방향</u></p> <p>2. ----- <u>계획</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u></p> <p>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p> <p>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p> <p>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 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4. ----- 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구성 · 운영 등----- -----.</p>
---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 <신 설>

## 제9조(암연구사업)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 5.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설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암연구사업) ① ~ ③ (현행  
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⑤ 암연구사업의 수행, 암연구 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련 정책수립, 연구, 기술개발 등 암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

터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 사업을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중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 작업을 수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  
성, 가공된 자료를 국가암관리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  
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  
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제공과 관  
련된 신청 및 제공 절차, 제공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10조의2 (암예방사업) 보건복지  
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  
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  
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암예방수칙 및 실천지  
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 행태 모니터링
3. 암예방 실천 유도를 위한 사

## 업개발

4. 대국민 암예방 교육 · 홍보사업

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 요인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노출 현황 및 인체 위해성 평가

3. 발암요인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제공

4.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발암요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암환자 -----  
-----  
-- 사람(이하 “암환자 등”이라 한다)은 -----.

③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 중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환자 등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암환자 등의 동의는 암환자 등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나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 신청자로 등록하는 것에 암환자 등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개별

<p>한다.</p> <p>1. ~ 3. (생 략)</p> <p>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 기준 ·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생 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 ·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기관 · 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제3항 · 제4항 ----- 등 의 료비 지원을 위해 ----- --.</p> <p>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 ----- ----- ----- ---. ----- ----- -----.</p>
---	---

<p>③ (생략)  <u>&lt;신설&gt;</u></p> <p>제15조(암정보사업)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암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u></li> <li><u>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u></li> <li><u>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 홍보</u></li> </ul> <p><u>&lt;신설&gt;</u></p> <p><u>4. 그 밖에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p> <p>제16조(역학조사)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으로 생성, 가공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5조(암정보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암정보 생산</u></li> <li><u>2. 암정보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u></li> <li><u>3. 암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u></li> <li><u>4. 암정보의 확산 및 보급</u></li> <li><u>5. -- 암정보 ----- ----- ----- ----- 사업</u></li> </ul> <p>제16조(역학조사) ① <u>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는 ----- -----</u></p>
---	---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

용과 시기 · 방법 및 제2항에 따  
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 임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암 발생율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 · 분석 · 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 · 연구사업

### <신 설>

### 3. (생략)

#### 4.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 지역암등록본부,

##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1. -- 발생률 -----  
-----  
-----

2. ----- 조  
사·연구

3. 암 발생, 생존, 유병, 사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중 1개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암  
데이터 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암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  
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  
축 및 운영

2. 암 데이터의 수집, 통합, 유  
지, 관리 및 제공

3. 암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  
제공을 위한 기획, 연구, 개발

4. 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위한 지침과 절차의 마련 및  
운영

5. 암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6. 암 데이터 사업을 위해 수집  
· 처리 ·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7.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  
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  
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p><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u>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u></p> <p><u>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p> <p><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u></p> <p><u>④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 ---- 수행한다.
1. 암의 발생 · 예방 · 진단 ·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1. ----- ----- 조사 ·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쟤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5.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u>사업수행</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의 암관리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 --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 -.
<신 설>	제2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21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입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관리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암생존자 건강관리 및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행

을 위한 기관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3. 암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보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연구

· 개발 사업

5. 암생존자 등록, 관리, 조사 사업

6.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대한 홍보

7. 제22조에 따른 암생존자통합

지지센터의 지정, 평가 및 제23조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취소

8. 암생존자 관리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

<신 설>

지지사업의 대상, 지원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

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지원

3.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인력 ·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암

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암생존자통합지지 사업

2. 지역사회 암생존자통합지지 사업 지원

3. 지역 중심 암생존자 홍보

4.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에게 관련 업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잘 못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으로 정한다.

제23조(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취

<신 설>

	<p>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 또는 암생존자동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동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u>암연구소</u> ,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 ----- <u>연구소</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0조(사업) ----- -----.

<p>1. 암의 발생 · 예방 · 진단 · 치료 및 <u>관리</u> 등에 관한 연구</p> <p>2. (생 략)</p> <p>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 · 훈련 및 지원 업무</p> <p>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u>홍보</u></p> <p>5.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1. ----- --- <u>관리, 암관리정책</u> ---</p> <p>2. (현행과 같음)</p> <p>3. 국가 암관리 사업 수행, 평가 및 지원</p> <p>4. ----- <u>교육 및 홍보</u></p> <p>5. ~ 7. (현행과 같음)</p> <p>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을 위한 교육</p> <p>9. 국가암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사업</p> <p>10.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 조에 따른 호스피스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p> <p>11. · 12.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p> <p>12. ----- <u>제11호</u>-----</p> <p>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8. · 9. (생 략)</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p> <p><u>&lt;신 설&gt;</u></p>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u>암연구소장</u>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 ----- <u>연구소장</u>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 · 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u>암연구소</u>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5조(직원 겸직) ① ----- ----- ----- ----- ----- ----- ----- -- <u>연구소</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u>국유재산의 무상대부</u> )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u>대부</u> 할 수 있다.	제38조( <u>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u> ) ① ----- ----- ----- ----- -- <u>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u> --.
② 제1항에 따른 <u>대부</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무상대부, 사용 · 수익 허가</u> -----.
<신 설>	제38조의2( <u>국유재산의 전대 등</u> )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  
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  
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  
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  
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  
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  
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완화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신 설>

<신 설>

5. · 6. (생 략)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비용 지원)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에 드는 비용

5.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비용

6.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 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48조(청문) -----  
----- 제20조 또는 제22조제3항-----  
-----.

제51조의2(별 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 · 방해 ·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